



군포시의회

GUNPO CITY COUNCIL



알기쉬운 군포시의회





알기쉬운 군포시의회

CONTENTS

군포시의회는?	3
의회 구성은?	4
시의회 의원은?	6
의회 운영은?	8
의회에서 하는 일은?	10
용어사전	14

군포시의의회는?

군포시의의회 표상

외부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형상화 했으며,
내부에 '의회'를 한글로 표시했습니다.
평화와 순수를 나타내는 백색 바탕에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색 문양이 활용된 상징입니다.



군포시의의회 연혁

제1대 의회 (1991. 4. 15.~1995. 6. 30.)

초대 시의원은 9명이었으나 1994년 12월 26일부터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임기가 15일 연장됐습니다.

제2대 의회 (1995. 7. 1.~1998. 6. 30.)

동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20명의 의원이 선출됐으나,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해 임기가 3년으로 조정돼 활동했습니다.

제3대 의회 (1998. 7. 1.~2002. 6. 30.)

11명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다만 재궁동 선거구 당선 의원이 2001년
7월 3일 중도 사퇴해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의원 수는 10명입니다.

제4대 의회 (2002. 7. 1.~2006. 6. 30.)

선거구가 조정돼 10명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002년 7월 3일 개원
후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제5대 의회 (2006. 7. 1.~2010. 6. 30.)

지방자치법에 의해 4개 선거구에서 8명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됐고, 1명
의 비례대표 의원이 추가돼 9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제6대 의회 (2010. 7. 1.~2014. 6. 3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8명(1개 선거구에서 2명씩)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됐고, 비례대표 1명이 추가 선출돼 총 9명이 활동했습니다.

제7대 의회 (2014. 7. 1.~2018. 6. 30.)

9명의 시의원이 제202회부터 제230회까지 21회의 임시회와 8회의
정례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에 충실했습니다.

제8대 의회 (2018. 7. 1.~2022. 6. 30.)

총 9명의 의원이 임기 4년간 100건(매월 평균 2.17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는 활발한 의원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의회 구성은?

의회 구성과 조직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52년 5월 10일 첫 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가 발생해, 군사정부 포고령 제4호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지방자치는 재개됐습니다.

군포시에서는 1991년 3월 26일 시민의 직접선거로 의원이 선출돼 초대 의회가 개원했고, 현재 4개의 선거구에서 8명의 지역구 의원과 1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전·후반기 각 1명)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의원

군포시의회 의원은 총 9명으로, 지방선거에서 시민에 의해 선출된 지역구 의원 8명과 비례대표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해 전문위원(2명), 의정팀장, 의사팀장, 입법홍보팀장 등 20여명의 직원이 각종 의회 사무 처리 및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위원회 의안 검토, 위원 보좌 및 의사진행 보좌 등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위원회는 자연히 소멸됩니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 승인 및 결산(안) 심사
- ▶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 :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심사
- ▶ 행정사무감사(조사) 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 ▶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 업무보고 청취
- ▶ 윤리특별위원회 : 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일

의정팀

- 의정기획 및 의정활동 지원
- 의원간담회 및 의회 행사 운영
- 의원 신상변동 관리(재산·겸직 신고 등)
- 의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리
- 예산 및 청사 유지관리 등

의사팀

-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 본회의·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지원
- 의안 접수 및 발의 처리
- 회의록 발간
- 회의 생방송 중계 진행
- 청소년·어린이 의회 견학 안내
- 의정모니터단 지원 등

입법홍보팀

- 의회 자치법규 업무 총괄
- 의원 의정활동 정책 지원
-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
- 홈페이지 관리
- 의회소식 및 의정책자 발간
- 의정뉴스 제작
- 기타 의회홍보에 관한 사항



시의회 의원은?



의원이 하는 일과 권한

의원은 주민의 뜻을 모아서 군포시(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의원들은 평상시 주민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을 위해 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의원이 하는 일

-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 시민의 건의(청원) 심사 및 처리
- 예·결산의 검토와 승인
-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등

의원의 권한

의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

- 회의에서 발언
- 의회가 하는 일에 의사 표시
- 주민의 어려움을 의회에 소개
-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제출 요구

여러 의원이 함께 하는 일

- 회의 소집
- 안건 심의
- 의안 제출
- 관계 공무원 출석 요청

의원의 선출

군포시에서는 시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4개 선거구(가·나·다·라)에서 2명씩 8명을 선출 하며, 비례대표 1인은 정당 득표수가 가장 높은 정당에서 추천한 1인이 선출됩니다.

- 가 선거구 :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 나 선거구 :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 다 선거구 : 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
- 라 선거구 :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 ※ 행정동 기준



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4년(지방자치법 제39조)으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됩니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재선거·증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기존 의원도 다음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투표를 통해 당선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임이라 하며, 재임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의원의 의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의회 운영은?



의회는 회의를 통해서 일을 하며,
회의에는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

의회 운영은 본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합니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합니다.

또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 중 개최합니다.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결정·변경 가능하며, 의사일정은 매년 말 의장이 정한 다음연도 연간 기본 일정에 따릅니다.

한편 재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시회는 시장이나 재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15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다만, 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시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임시회의 소집 공고는 집회일 3일 전에 하며, 집행부가 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시장이 미리 공고합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회 의결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중요 조례안의 제·개정 및 폐지, 예·결산안의 심사 및 처리,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재해대책, 청원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합니다.



회의 소집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회의를 하자고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집회요구라고 합니다. 임시회는 시장이나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하는데 의원 소집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이 요구에 의해서 집회일 3일 전까지 언제 몇 시에 집회한다고 집회 공고를 내게 됩니다.

다만, 연간 회의 총 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집과 회기

- 정례회 : 연 2회 개최하며, 총 40일 이내
- 임시회 : 각 회기는 20일 이내
-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



의회에서 하는 일은?



의회 의결

국가에는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광역시) 및 시·군·구(기초)에는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군포시의 중요 정책을 최종 심사·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군포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특히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결산안 승인

예산안 심사

예산안 편성 / 제출(군포시장)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소관부서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

- 의회는 시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해 제출

본회의 심의 의결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결산안 승인

지방자치단체장(군포시장)의 결산서 등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도 첨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산안 의회 승인 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은 작성된 결산서 등의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결산안 승인을 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문제점의 시정

-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결산안을 심사
-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함

본회의 승인

-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
- 지방자치단체장은 승인을 받은 지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내용을 고시

의회에서 하는 일은?



행정사무감사 / 조사

의회는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권을 발의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서류제출 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 청원제도

청원서 제출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청원서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의장이 청원서를 접수해 소관위원회에 회부

청원서 심사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청취가 가능하며 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소개 의원은 청원의 취지를 설명

청원서 이송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 시장에게 이송



각종 안건 처리

각종 동의, 승인, 건의, 결의, 의견청취 등의 안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의원은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회 견학 및 개방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려 민주 시민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의회 시설의 견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의가 없을 때는 군포시의회 1층 로비를 전시 및 행사장으로, 2층 문화강좌실은 간담회 및 토론 공간으로 개방합니다.

의회 방청

군포시의회의 회의장은 회기 중 모든 시민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 정례회(2회) : 제1차 6월 1일, 제2차 12월 1일 개최(개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집회)
 ※ 지방선거가 시행된 연도는 1차 정례회가 9월 또는 10월
- 임시회(수시) : 시장 또는 시의회 재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소집

※ 문의 [방청·견학 : ☎ 031-390-8715
 시설물 사용 : ☎ 031-390-8727

인터넷 방송

모든 회의는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으로 실시간 제공됩니다.

- tv.gunpocouncil.go.kr

용어사전



용어사전 ······

과반수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 이상과는 다른 개념.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 의회, 보통 '시·군·구의회'라고 표현.

대안

원안과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을 대신할 내용으로 발의하는 수정안의 일종. 일반적으로 1개 명칭의 조례안에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해 단일 안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떼기) 형태를 취하게 됨.

동의안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재산 관리, 지방채 발행 등)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

발의자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될 수도 있음.

부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

속기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 적는 것은 불가능함. 그래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해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

심의와 심사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즉 의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말함. 심의는 본회의 논의 단계,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

의결정족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함.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송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청원, 행정조사 및 감사 결과 보고 등.

정회

개원의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 회의 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 시행.

집회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

참고인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지식, 경험 등)을 밝히는 사람. 참고인은 선서의무가 없으며 답변과 설명 또는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음.

청원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을 대상으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법률, 명령의 제정, 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해 희망을 개진.

폐회

개회의 반대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

표결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행동으로 찬성·반대 의사 표시하는 과정

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 기간을 정해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함.

휴회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 위원회 활동이나 중요한 행사 등의 이유로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 유용한 사이트

1. 군포시의회 어린이의회 : gunpocouncil.go.kr/child
2. 경기도어린이의회 : ggc.go.kr/site/children/home
3. 어린이국회 : child.assembly.go.kr





발행처 군포시의회

Place of issue Gunpo City Council

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6 Cheongbaengni-gil, Gunpo-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5829

Tel 031-390-8719

Fax 031-392-4004

gunpocouncil.go.kr